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59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에 따라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시장 및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수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협의회 사무국 업무 관장은 공동의장 중 1명이 함(안 제8조)

마.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연 1회 개최로 변경함(안 제11조)

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함(안 제13조)

사.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14조)

- 분과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 구성으로 변경
-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규정

아.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자.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한 2명의 감사를 회계감사(회계전문가)와 사업감사 각 1명씩으로 변경함(안 제21조)

차.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정산, 감독에 관한 사항 삭제함(안 제24조 및 안 제26조)

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3,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1
----------	-----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김혜란·박해정·손태화 의원(3명)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에 따라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안 제3조)
- 나. 시장 및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수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라. 협의회 사무국 업무 관장은 공동의장 중 1명이 함(안 제8조)
- 마.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연 1회 개최로 변경함(안 제11조)
- 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함(안 제13조)
- 사.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14조)

- 분과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 구성으로 변경
-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규정

아.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자.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한 2명의 감사를 회계감사(회계전문가)와 사업감사 각 1명씩으로 변경함(안 제21조)

차.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정산, 감독에 관한 사항 삭제함(안 제24조 및 안 제26조)

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시민과 사업자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평가·자문 및 녹색창원 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평가·모니터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녹색창원21과 관련된”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으로, “연구”를 “연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사업 추진
2.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4.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6.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업무의 추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를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명 이내

제8조제2항 중 “주민, 학계, 기업,”을 “시민, 학계, 기업,”으로, “주민, 학계, 기업의”를 “시민, 학계, 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 사무국 업무 관장은 공동의장 중 1명이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회”를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 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을 “공동의장,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을 “공동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회의는”을 “운영위원회의 회의는”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천
2.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속가능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중 “회의는”을 “특별위원회의 회의는”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회하고,”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17조 중 “협의회”를 “협의회 또는 각 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2명의 감사를”을 “회계감사(회계전문가)와 사업감사 각 1명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

분) 중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제2호 중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창원21의”를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으로 한다.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속가능 발전법</u>」 및 「<u>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u>」에 따라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속가능 발전 기본법</u>」 및 「<u>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u>」----- ----- ----- ----- -----.</p>
<p>제2조(기본이념) <u>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실천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u>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녹색창원21</u>”이란 지역의 주민·기업·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u>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u></p>	<p>제3조(정의) ----- -----.</p> <p>1. “<u>지속가능성</u>”이란 「<u>지속가능 발전 기본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u>지속가능성을 말한다.</u></p>

시가 실천해야 할 창원시 의제2
1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발전에서 환경을 보전하며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파괴하
지 않는 발전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녹색창원2
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
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
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립한 녹색창원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
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창원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창원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
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창원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

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녹색창원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한 창원발전을 위한 행동목표의 계획수립 및 실천
2. 시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및 녹색창원 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녹색창원 21의 실천과정 점검 및 이에 대한 평가
5. 녹색창원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제5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시민

과 사업자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6조(기능) -----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사업 추진
2.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3. -----

평가·모니터링
4.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
----- 연대사업

분야의 전문가

③ (생략)

제8조(공동의장 및 회장) ① (생략)

② 협의회는 공동의장은 주민, 학계,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4명으로 하며, 주민, 학계, 기업의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행정의 대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제11조(총회 등) ①·② (생략)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 3. (생략)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략)

제13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동의장 및 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민, 학계, 기업, -----
----- 시민, 학계, 기업의 -----

③ 협의회 사무국 업무 관장은 공동의장 중 1명이 한다.

제11조(총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회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개의(開議)하고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

공동의장,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 (생략)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① (생략)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

-----.

② ----- 공동의
장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
----- 개 의 하고, -----
-----.

제14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
음)

② -----
----- 20명 -----
-----.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
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천
2.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속가능목표 이행을 위한 조
사 및 연구
4.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15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7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

음)

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
----- 개 의 하 고, -----
-----.

제15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17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 또
는 각 위원회-----

-----.

제21조(감사) ① -----

----- 회계감사(회계전문가)와
사업감사 각 1명씩을 ---.

② -----

----- 보고해야 -----.

제22조(사업의 평가) ① -----
회계연도-----

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회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삭 제
2.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창원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생 략)

제2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회의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경비의 지원) -----

-----.

2.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 제17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제2조(기본이념)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실천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창원21”이란 지역의 주민·기업·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창원시 의제21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발전에서 환경을 보전하며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파괴하지 않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4.>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녹색창원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수립한 녹색창원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녹색창원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한 창원발전을 위한 행동목표의 계획수립 및 실천
2. 시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개정 2016. 12. 28.>
3.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및 녹색창원 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2016. 12. 28.>
4. 녹색창원 21의 실천과정 점검 및 이에 대한 평가 <개정 2016. 12. 28.>
5. 녹색창원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개정 2016. 12. 28.>

6. 그 밖에 녹색창원 2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 <개정 2016. 12. 28.>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소관 부시장, 소관 실·국장 및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 20., 2013. 3. 15., 2013. 12. 30., 2014. 12. 24., 2016. 12. 28., 2020. 6. 30.>

1. 창원시의회 의원 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명

2.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 <개정 2014. 12. 24.>

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③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 12. 24.> <개정 2016. 12. 28.>

제8조(공동의장 및 회장) ① 협의회는 회장을 소관 부시장을 제외한 3명의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하고, 그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 부시장을 제외한 공동의장 중 1명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 20., 2020. 6. 30.>

② 협의회는 공동의장은 주민, 학계,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4명으로 하며, 주민, 학계, 기업의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행정의 대표는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 20., 2020. 6. 30.>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4.>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6. 12. 28.>

제11조(총회 등) ①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 소속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전문개정 2014. 12. 24.]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4.>

③ 사무국장은 공동의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14. 12. 24.>

제13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 12. 24., 2016. 12. 28.>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관 실·국장 및 소관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4. 12. 24., 2016. 12. 28., 2020. 6. 30.>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4.>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사업의 조정 <개정 2016. 12. 28.>

5.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28.]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2. 24.>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28.]

제15조(특별위원회) ① 지역과 세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개정 2014. 12. 24., 2016. 12. 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 12. 28.>

[제목개정 2016. 12. 28.]

제16조 삭제 <2014. 12. 24.>

제17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8월까지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 예산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6. 12. 28.>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16. 12. 28.>

2.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창원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 12. 2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제2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